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납 세
고 지 서

우체국

바코드
18mm

음성변환용(
외부)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자동차세(자동차소유)

받는 사람

바코드
17mm

우편반송용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작

온 라 인

※상세안내 후면 참조

바코드
18mm

음성변환용(내부)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시·군 자동차세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부할 세액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금액

수납은행용
바코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직인

시·군 자동차세(소유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납세자용)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음면동	과세번호	검

납 세 자

납세자번호:

주 소
과세대상

지 방 세

세 목	납부할 세액	부과내역(과세표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합 계		

납기 내
까지

납기 후
까지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수납인

전자납부
번호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부과 안내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비영업용: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kg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구분				과세표준		세율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납부할 세액		30%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24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제149조부터 제154조까지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징수방법		구 분		과세기간		납 기	
		제1기분		1~6월		6.16~30.	
		제2기분		7~12월		12.16~31.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가 부과되고,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마다(최대 60개월까지) 그 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 × 0.66% × 경과월수)					
구제신청 기한 안내							
이의신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활용란